

행정자치부 징계·주의 요구

제 목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징계대상자 ① 경상남도 ○○소방서(전 ○○○○과) 지방○○경 ○○○
② 경상남도 ○○소방서(전 ○○○○과) 지방○○정 ○○○
③ 경상남도 ○○소방서(전 ○○○○과) 지방○○정 ○○○
④ 경상남도 ○○○○과 지방○○정 ○○○

※ 주의대상자 ① 경상남도 ○○본부 ○○준감 ○○○
② 국민안전처 ○○○○○과(전 ○○본부) ○○준감 ○○○

징계종류 중징계, 경징계

내 용

1. 관련자 조서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업무와 관련, ○○소방서 지방○○경 ○○○는 2015. 1. 1. 부터 2016. 1. 20까지 ○○○○과 업무담당자로, 지방○○정 ○○○은 2014. 7. 4. 부터 2016. 7. 6까지 ○○○○ 담당계장으로, 지방○○정 ○○○는 2014. 7. 4. 부터 2016. 1. 3까지, 지방○○정 ○○○은 2016. 1. 4. 부터 2016. 11. 30현재까지 각각 ○○○○과 담당과장으로, ○○준감 ○○○는 2014. 2. 10. 부터 2015. 7. 5까지, ○○준감 ○○○는 2015. 7. 6.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본부장으로 근무중이다.

2. 사건개요

경상남도 ○○본부에서는 2015년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 2015. 1. 28. 관련법령에 따라 경력 응시기준을 적용하여 「2015년도 신규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 전년도와 같은 응시요건으로 2016. 1. 20. 「2016년도 신규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경력 응시기준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2015년과 2016년 경력경쟁채용 직렬 중 ‘구조, 구급, 전산, 통신’ 등 4개 분야 중 ‘구급’ 분야만 임의로 경력을 제한하지 않고 「자격증」 소지자로만 하였으며, 2016년도 ‘구급상황관리사’ 직렬은 관련분야 근무실적(3년)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근무 중인 자」로만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그 결과, 무경력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 되는 결과(2015년 3명, 2016년 18명)를 초래하였고, 구급상황관리사분야 채용 시 정당한 지원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표 1]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2015년 및 2016년 공고문 중 응시요건

2015년 공고문 중	2016년 공고문 중																		
<p>[붙임 3]</p> <p>경력경쟁(특별채용) 응시자격 및 경력기준</p> <p><input type="checkbox"/> 관련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3호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3항 내지 제5항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3항 <p><input type="checkbox"/> 경력경쟁 자격 및 경력기준(공통사항 제외)</p> <p><input type="checkbox"/> 구조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 ※ 특수부대 : 육군특전사, 육군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사, 공군공정통제사(CCT),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수방사 35특공대대 ※ 기초군사훈련 교육기간 제외하고 특수훈련 교육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 <p><input type="checkbox"/> 구급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구조학과 및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응급구조사 1급 및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p><input type="checkbox"/> 전산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p><input type="checkbox"/> 면허(자격) 및 경력 제한</p> <p>○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계급)</th> <th>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th> </tr> </thead> <tbody> <tr> <td>구조(지방소방사)</td> <td>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전역예정 6개월 이내에 있는 자)</td> </tr> <tr> <td>구급</td> <td>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td> </tr> <tr> <td>전산(지방소방사)</td> <td>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td> </tr> <tr> <td>통신(지방소방사)</td> <td>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td> </tr> <tr> <td>구급상황관리(지방소방사)</td> <td>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상남도 119통합방재센터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td> </tr> <tr> <td>항해(지방소방사)</td> <td>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승무경력이라 함은「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하며,「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td> </tr> <tr> <td>항공정비(지방소방장)</td> <td>항공법에 의한 회전의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td> </tr> <tr> <td>항공조종(지방소방위)</td> <td>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회전의 항공기 1,500시간이상 비행경력(중 비행시간을 말함,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항공법에 의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td> </tr> </tbody> </table>	분야(계급)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조(지방소방사)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전역예정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구급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전산(지방소방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통신(지방소방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구급상황관리(지방소방사)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상남도 119통합방재센터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	항해(지방소방사)	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승무경력이라 함은「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하며,「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항공정비(지방소방장)	항공법에 의한 회전의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항공조종(지방소방위)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회전의 항공기 1,500시간이상 비행경력(중 비행시간을 말함,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항공법에 의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
분야(계급)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조(지방소방사)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전역예정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구급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전산(지방소방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통신(지방소방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구급상황관리(지방소방사)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상남도 119통합방재센터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																		
항해(지방소방사)	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승무경력이라 함은「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하며,「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항공정비(지방소방장)	항공법에 의한 회전의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항공조종(지방소방위)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회전의 항공기 1,500시간이상 비행경력(중 비행시간을 말함,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항공법에 의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																		

3.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 위법한 법 적용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및 「소방공무원 임용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에는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으로 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②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 3년의 근무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③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2]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계법령 주요내용 및 흐름도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②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2. <u>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u>	③ <u>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u> 이어야 한다.	① <u>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u> * 구급분야: 응급구조사(1급·2급), 간호사, 의사
3. <u>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u>	⑤ <u>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 등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이어야 한다.	③ <u>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u> * 구급분야: 응급구조학과·간호학과·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④ <u>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u>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u>관련있는 직무분야의</u>	② <u>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u>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②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p>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 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p> <p>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p> <p>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사람</p>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⑧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無 경력 구급 소방공무원 채용) 경상남도 ○○본부에서는 2015년 및 2016년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진행하면서 구조·전산·통신·항해·항공정비·항공조정 직렬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2년으로 제한한 반면, 구급 직렬의 응시자격기준을 제한⁸¹⁾함에 있어서 [표 3] 및 [표 4]와 같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해당분야 종사경력을 제외함으로써 有 경력 지원자가 탈락한 반면, 無 경력 부적격자 21명(2015년 3명, 2016년 18명)이 최종 구급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비록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의 잘못에 의한 실수로 응시요건을 달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1991. 2. 28일 개정·시행된 후 응시요건의 변화가

81) ① 경력경쟁채용 선발 응시자격기준을 공고하는데 있어서 2014년까지는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 요건을 명시하였으나, '15년~'16년 구급분야 응시자격 기준만 해당분야 경력기준을 제외한 점 ② 17개 시도 소방본부 중 경상남도 소방본부만 경력기준을 제외한 점 ③ 동일한 법 조항을 적용하면서 8개 직렬 중 구급 직렬만 특정하여 경력기준을 제외

없어 법령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 ② 17개 시·도 소방본부의 2015년~2016년 공고문 중 경상남도만 유일하게 ‘구급’ 분야의 경력 응시 요건을 제외한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음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관련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표 3] 無 경력 구급 소방공무원 선발 관련규정 및 위법내용

관 련 규 정	위 법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 자격 등의 기준) ▶ 내용 :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 소방공무원 채용시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미적용 선발 ⇒ '16년의 경우 무경력자가 합격(18명)하고 유경력자가 불합격(19명)하는 결과 발생 * 구조·전산·통신·항해·항공정비·항공조정 직렬 채용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적용

[표 4] 채용계획 및 채용결과 (단위 : 명)

연도	구분	응시분야(無 경력)							
		구조	구급	전산	통신	구급상황관리사	항해	항공정비	항공조정
2015	계획	10	25	2	3				
	응시	24	76	2	6				
	선발	10	22(3)	없음	없음				
2016	계획	30	35	2	3	3	1	1	2
	응시	69	151	9	11	4	4	8	5
	선발	30	35(18)	2	3	3	1	1	2

(구급 상황관리사 소방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제한경쟁) 2016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공고시 ‘구급상황관리사’는 해당분야 근무기간을 적용하지 않지 않으면서 ‘경상남도 119 ○○○○센터 에서 근무 중인 자’로만 공고하여 정당한 지원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비록, 국민안전처 ○○○○과 공문의 ‘계속 근무 중인 자’를 인용한 것으로 볼 때 고의적인 의도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표 5] 2014년 국민안전처(○○○○과) 공문 및 2016년 경남 소방본부 채용 공고문

2014년 국민안전처(○○○○과)	세 부 내 용																																																																			
<p>□ 근거법령(경력경쟁채용시험)</p> <p>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p> <p>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4항제1호(경력경쟁채용의 요건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으로서 당해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p> <p>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응시자격등의 기준)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3의 구분에 의한 채용 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p> <p>시행규칙 (별표3) (계급환산기준표) 용급의료정보센터가 정부관리기법에 해당 ※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4223호)</p> <table border="1" data-bbox="300 831 722 891"> <tr> <td>정부관리기법</td> <td>과장</td> <td>계장</td> <td>계장</td> <td>평사원</td> <td>평사원</td> <td>평사원</td> </tr> <tr> <td>환산계급</td> <td>지방 소방령</td> <td>지방 소방경</td> <td>지방 소방위</td> <td>지방 소방장</td> <td>지방 소방교</td> <td>지방 소방사</td> </tr> </table> <p>□ 대상인원 : 73명(채용계급은 시도 자체 결정)</p> <table border="1" data-bbox="178 972 727 1189"> <tr> <td>구급상황관리사</td> <td>현 직급</td> <td>1급</td> <td>2급</td> <td>3급</td> <td>4급</td> <td>5급</td> </tr> <tr> <td></td> <td>현 봉급</td> <td>의사</td> <td>일반직 5급</td> <td>일반직 6급</td> <td>일반직 8급</td> <td>일반직 9급</td> </tr> <tr> <td></td> <td>응시자격</td> <td>-</td> <td>소방위</td> <td>소방장</td> <td>소방교</td> <td>소방사</td> </tr> <tr> <td>소방공무원 특별채용</td> <td>부여조건 (1339근무이전 경력 제외)</td> <td>-</td> <td>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이상, 그 중 2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td> <td>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이상, 그 중 3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td> <td>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이상, 그 중 4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5급으로 6년이상 근무한 자</td> <td>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이상, 그 중 5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td> </tr> <tr> <td></td> <td>대상인원 (73명)</td> <td>-</td> <td>-</td> <td>2</td> <td>29</td> <td>42</td> </tr> </table> <p>※ 응시자격 : 1339-119업무통합으로 이관(125명)되어 현재까지 시·도 소방본부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119명)로서 만 40세 이하(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군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2년미만 - 2세 3년미만 - 3세 2년 이상)</p>	정부관리기법	과장	계장	계장	평사원	평사원	평사원	환산계급	지방 소방령	지방 소방경	지방 소방위	지방 소방장	지방 소방교	지방 소방사	구급상황관리사	현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현 봉급	의사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일반직 8급	일반직 9급		응시자격	-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부여조건 (1339근무이전 경력 제외)	-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이상, 그 중 2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이상, 그 중 3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이상, 그 중 4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5급으로 6년이상 근무한 자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이상, 그 중 5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대상인원 (73명)	-	-	2	29	42	<p>□ 면허(자격) 및 경력 제한</p> <p>○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p> <table border="1" data-bbox="817 591 1417 1285"> <thead> <tr> <th>분 야 (계 급)</th> <th>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th> </tr> </thead> <tbody> <tr> <td>구조 (지방소방사)</td> <td>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전역예정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육군특전사, 육군정보사, 특공(인)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OT), 공군공정통제사(CC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24특검대, 헌법특검대, 수방시35특공대</td> </tr> <tr> <td>구급 (지방소방사)</td> <td>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td> </tr> <tr> <td>전산 (지방소방사)</td> <td>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td> </tr> <tr> <td>통신 (지방소방사)</td> <td>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td> </tr> <tr> <td>구급상황관리 (지방소방사)</td> <td>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상남도 119종합방재센터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td> </tr> <tr> <td>항해 (지방소방사)</td> <td>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0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하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td> </tr> <tr> <td>항공정비 (지방소방장)</td> <td>항공법에 의한 회전의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td> </tr> <tr> <td>항공조종 (지방소방부)</td> <td>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회전의 항공기 1,500시간이상 비행경력(총 비행시간을 말함,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항공법에 의한 제1종 항공선체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td> </tr> </tbody> </table>	분 야 (계 급)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구조 (지방소방사)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전역예정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육군특전사, 육군정보사, 특공(인)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OT), 공군공정통제사(CC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24특검대, 헌법특검대, 수방시35특공대	구급 (지방소방사)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전산 (지방소방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통신 (지방소방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구급상황관리 (지방소방사)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상남도 119종합방재센터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	항해 (지방소방사)	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0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하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항공정비 (지방소방장)	항공법에 의한 회전의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항공조종 (지방소방부)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회전의 항공기 1,500시간이상 비행경력(총 비행시간을 말함,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항공법에 의한 제1종 항공선체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
정부관리기법	과장	계장	계장	평사원	평사원	평사원																																																														
환산계급	지방 소방령	지방 소방경	지방 소방위	지방 소방장	지방 소방교	지방 소방사																																																														
구급상황관리사	현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현 봉급	의사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일반직 8급	일반직 9급																																																														
	응시자격	-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부여조건 (1339근무이전 경력 제외)	-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이상, 그 중 2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이상, 그 중 3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이상, 그 중 4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5급으로 6년이상 근무한 자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이상, 그 중 5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대상인원 (73명)	-	-	2	29	42																																																														
분 야 (계 급)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구조 (지방소방사)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전역예정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육군특전사, 육군정보사, 특공(인)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OT), 공군공정통제사(CC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24특검대, 헌법특검대, 수방시35특공대																																																																			
구급 (지방소방사)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전산 (지방소방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통신 (지방소방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구급상황관리 (지방소방사)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상남도 119종합방재센터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																																																																			
항해 (지방소방사)	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0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하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항공정비 (지방소방장)	항공법에 의한 회전의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항공조종 (지방소방부)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회전의 항공기 1,500시간이상 비행경력(총 비행시간을 말함,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항공법에 의한 제1종 항공선체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																																																																			

① 공문은 법령(소방공무원법 제6조 ②항 2호)을 우선할 수 없으며, ② 국민안전처 공문의 내용 중 유사경력(3년)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계속 근무 중인 자’만을 인용하는 등 공문 내용 중 일부만 임의로 적용하였고, ③ 17개 시·도 소방본부 채용 공고문 비교시 경상남도 소방본부만 ‘계속 근무 중인 자’로 제한한 것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로 지원요건을 갖춘 응시 대상자가 지원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 (지방○○경 ○○○, 지방○○정 ○○○) 2015년~2016년 실무담당(담당자와 팀장)으로 단순 법령 해석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① 2015년 최초

채용계획 수립의 책임자로 관련법령의 검토 시 심도있는 연찬(법무팀 의뢰 등) 없이 본인들의 단순 판단에만 의존하였고, ② 총 21명(2015년 3명, 2016년 18명)의 ‘無 경력 구급 소방공무원 채용’ 되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 되었으며, ③ 2016년 ‘구급상황관리사’ 채용 응시요건 중 법적인 관련근무 경력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근무중인자’로만 제한하여 정당한 자격이 있는 지원자 2명이 지원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공정한 채용이 저해되었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5조(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근거하여 담당자(최초의 법률검토 책임)와 담당계장이 계획수립 및 기안과 결재 모든 과정을 협의하여 추진(○○○ 및 ○○○ 문답서 진술) 한 점을 판단해 볼 때 과실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음.

나. (지방○○정 ○○○) 2015년 담당과장으로 채용계획에 대해 응시요건 등 세부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계약적인 채용규모만 보고를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 채용계획은 도지사 결재사항으로 중간 검토자로서 세부 내용을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② 응시요건은 합격자를 결정하는 채용의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중간 검토자로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다. (지방○○정 ○○○) 2016년 담당과장으로 채용계획에 대해 응시 요건 등 세부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중간 검토자로서 ‘구급’과 ‘구급상황관리사’의 직렬의 경력 응시요건이 완화되었음을 인지하여 담당자에게 확인(전년도와 같고 문제가 없음을 보고 받음) 하는 등 중간 검토자로서 역할을 하였음이 인정되어 지나, ① 응시요건의 적법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아 2015년 채용된 無 경력 구급 소방공무원 3명에 비하여 많은 18명의 無경력 구급 소방공무원이 채용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되었고 ② 2016년 ‘구급상황관리사’ 채용 응시요건 중 법적인 관련근무 경력은 적용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의 적용으로 자격이 있는 정당한 지원자가 지원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경력경쟁 채용을 저해하도록 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라. (○○준감 ○○○, ○○준감 ○○○) 2015년~2016년 경상남도 ○○본부장으로 채용계획은 실무담당자들이 세부 내용들을 수립하였고 전체적인 채용 규모만 보고 받은 것은 인정되나(지방○○정 ○○○ 문답서), ○○본부장으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징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위 관련자 중 지방○○정 ○○○와 지방○○정 ○○○은 중징계, 지방○○정 ○○○과 지방○○정 ○○○는 경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관련자 중 ○○준감 ○○○와 ○○준감 ○○○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적의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선별적 법적용에 따른 無 경력 소방공무원이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무·감독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